

【사건번호 2023-056】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등록데이터 사건

1. 개요

- 피신청인: 농림축산검역본부
- 대상 공공데이터: 동물등록증 데이터
- 신청목적: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사업 추진

2. 신청취지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*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.

* 동물등록증 데이터중 등록관리 데이터 중 소유자 정보를 제외한 반려동물 정보(반려동물 등록번호, 반려동물 이름, 소재지, 성별, 품종, 중성화 여부, 관할 구청명, 출생연월일 등)

3. 조정내용

가. 조정결정 사항

- 이 사건 데이터는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'공공데이터법'이라 한다.)」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이유있다.

나. 조정결정 이유

-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.
 - 다만, 공공데이터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'정보공개법'이라 한다.)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호).
-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관례, 당사자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, 피신청인은 반려동물 등록정보 중 반려동물 소유자 정보(이름·생년월일) 및 동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시 등록된 반려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Open API를 제공 중에 있으나,

- 신청인은 분쟁조정 대상 데이터로 신청한 전체 반려동물 정보 중 소유자 정보 외에 필수 제공 요청 항목으로 반려동물 등록번호, 반려동물 이름, 품종, 반려동물 출생 정보(연월일)의 제공을 요청하였다.
- o 이 사건 데이터 중 반려동물 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반려동물 이름, 품종, 출생 정보 등 신청 데이터 항목 뿐만 아니라 소유자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공개 정보 등 추가 정보의 입수 가능성, 결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제1호 '나'목에 따른 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.
- o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제공하거나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도록 조정한 사례가 있으나,
 - 정보주체의 제공 동의 하에 반려동물 상세 등록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은 이미 Open API를 통해 제공 중에 있으며,
 - 이 사건 데이터 중 '반려동물 등록번호'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데이터 가공 노력·비용을 초래하는 반면, 반려동물을 등록 번호로 식별하여 관리하려던 신청인의 당초 데이터 활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.
- o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.

4. 조정결과

-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